계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 성 초 등 학 교

Ⅰ 발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2023. 9. 27. 시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2023. 6. 28. 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023-34호 (2023. 9. 1. 시행)

Ⅱ 방향

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체계적 정비

나.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 규칙 마련

나.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공포 등 관련 절차 준수

Ⅲ 계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초안)

제1장 학생생활규정이란?

제1조(이름과 뜻) 이 규정의 이름은 '계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고 '생활규정'이라고 간단히 쓴다. 생활규정은 학생 생활과 관련된 계성초등학교 공동체의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2조(생활규정을 만든 목적) 생활규정은 계성초등학교 공동체가 학생의 인권을 비롯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들이 생활규정을 배우고 함께 고쳐가면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시민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제3조(뒷받침하는 법) 이 규정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라 계성초등학교 공동체에 적용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4조(기본 원칙) ① 모든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학생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피부색이나 사용하는 언어, 병에 걸리거나 또는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학생과 관련된 것을 결정할 때는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야 한다. 넷째, 학생은 규정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③ 이 규정은 계성초등학교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한 말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이해하고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교육[1]"이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학생이 일상의 전반에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통 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6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고시」 "제2조(정의)" 4항에서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삶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고시"의 '학생생활지도'를 '학생생활교육'의 용어로 안내함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고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4.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6.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③ 학교의 장("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및 법인" 등을 포함)과 교원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을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적혀 있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

제8조(생활교육의 범위 및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제9조(학교 공간과 물건의 사용) ① 학교는 학생들이 활동하기 좋은 교실과 휴식 장소, 놀이나 예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정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간과 물건을 아껴야 한다.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하고 사용한 뒤에는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

제10조(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존중) ①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물건을 아끼고 남의 물건을 사용할 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되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②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그 피해를 복구할 책임이 있다.

제11조(학습할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으며 학습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갈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자신과 친구들의 학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12조(휴식시간) ① 학교는 쉬는 시간과 놀이 시간, 점심시간을 정하고, 해당 시간에 학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쉬는 시간 동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③ 학교는 정해진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을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여 학생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머리모양이나 옷차림 등 차림새) ①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액세서리 등을 하여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차별적인 문구나 그림이 담긴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 등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교장과 교원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학교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교육활동에 따라 안내되는 복장(학교 체육복, 기타 단체활동복)을 착용한다.

제14조(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 소지·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학교 안에서 수업 시간 및 쉬는 시간(중간놀이 시간 포함)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시간 및 쉬는 시간(중간놀이 시간 포함)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비롯하여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의 및 훈육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⑤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고 학급에 있는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하고, 보관함은 담임교사가 관리한다. 하교 전 담임교사가 보관함을 열어주고, 학생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 있다.

제15조(물품 소지 제한과 분리 및 소지품 검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부적합한 물품에는 고가의 물품 및 담임 재량에 의해 금지된 물품도 포함한다. 단, 2회 이상의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학생이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학생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허락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성냥, 라이터, 폭죽 등 불을 일으키거나 잘 타는 물질(인화성 물질), 칼, 장난감 총, 레이저 포인터 등 날카롭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맞혀 다치게 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담배, 술 등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 음란물 등
3. 그밖에 교육과 상관없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 도박과 관련된 놀이 도구 등
4. 녹화, 녹음할 수 있는 도구: 카메라, 녹음기 등
③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table>
<tr><th colspan="2">분리요건</th><th>분리기간</th><th>분리장소</th><th>분리·보관방법</th></tr>
<tr><td>1호</td><td>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td><td>수업 시간</td><td>교실 내
교사 책상</td><td>•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되돌려줌</td></tr>
<tr><td>2호</td><td>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td><td rowspan="3">3일</td><td rowspan="3">교무실</td><td rowspan="3">• 지도교원은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반환 방법 등을 해당 학생에게 알림
↓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해당 물품 지정 장소로 분리보관, 물품 분리 교육 지도 내용(일시, 경위 등) 학교의 장에게 보고([서식 23]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
• 물품 분리보관 사안(일시, 경위, 반환 방법, 폐기 관련사항 등) 보호자에게 알림([서식 23] 활용)
↓
•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가능
([서식 24] 물품 폐기 확인서)</td></tr>
<tr><td>3호</td><td>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td></tr>
<tr><td>4호</td><td>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td></tr>
</table>

※ 제1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는 반환의 대상은 보호자로 한다.
※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SMS(문자메세지), 유선 연락 등 통상적인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예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④ 교원은 제3항에 따라 분리 및 보관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2]가 있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사이버 공간)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학교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⑤ 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학생 간 대화 등) 등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안전) ① 학생은 교내외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을 포함한 여러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안전하게 활동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교원,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제18조(학교생활) 학생들은 모두가 학습에 집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그 외 교육활동이 끝나면 바로 하교해야 한다.
2. 학생은 등하교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 지정된 일시 승하차 구간에서만 내리도록 한다. 단, 몸이 불편한 학생은 교문 안에서 내릴 수 있다.
3. 등교 후 마음대로 교문 밖으로 외출(조퇴)하지 않는다. 단, 필요할 때에는 담임교사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외출(조퇴)할 수 있다. 조퇴할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조퇴확인서를 받아 학교지킴이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수업 시간 중에는 수업 장소에서 교사의 허락 없이 나가지 않는다.
5. 복도에서 오른쪽으로 다니기, 차례 지키기, 실내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등 예의를 지킨다.
6. 장소에 따라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7. 다음 각 목의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교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다.
가. 실외 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나. 교내에서 외부인과 만나고자 할 때
다.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라.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9조(동아리활동) ① 학생은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다.
② 동아리활동을 위한 학교 공간 사용이나 시간은 담당 교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③ 동아리가 구성되면 학교에서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동아리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동아리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2) 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을 목격 및 구체적인 소지 신고가 있거나 절도 등이 명확히 식별되었을 경우, 자해 또는 자살 등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약물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생활교육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방법	학습지원
1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중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3]	교실 내 다른 좌석 등 수업 교원 지정 장소 (수업 시간 내 일부)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주의를 준 후 실시 •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을 분리할 수 있음 • 단,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원이 정할 수 있음 • 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일 때 복귀를 지시할 수 있음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원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지속해서 방해하여, 교육활동 진행이 심각하게 어려울 경우[4]	교실 뒤편, 운동장 스탠드, 강당 뒤편 등 (수업 시간 내 일부)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계속해서 방해할 경우 나.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다. 수업 중 학생 간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여 교사가 정당한 지도를 했음에도 수업 진행에 어려울 정도로 진정되지 않는 경우 라. '가, 나, 다'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수업 종료 시까지)	• 교원이 학생보호인력[5]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해당학생은 학생보호인력과 함께 학교별 지정 장소로 이동 •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 하고 필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위 제3호의 지도에 의한 분리를 했음에도 지도감독 교원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나. 위 제3호 지도에 따른 분리에도 불구하고 1일 이내 재차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경우	교무실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식사시간 20분 보장, 최대 60분 내외)	•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을 남겨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가정학습	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 나. 제3호 및 제4호 분리를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보호자와 연락이 닿아 학교에 방문하는 시간까지)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및 자료 공유 적극 협조해야 함.	가정학습 확인서 제출

② 교원은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생활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의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생활교육 불응 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2장(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생이 지속적으

---

3) 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등

4)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교사의 허락 없이 지속해서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등

5) 학생보호인력은 교직원, 교육활동보조인력(협력교사), 보안관이며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한다

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22조(이의 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장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제23조(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① 학교는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지키지 않아 교육과 선도가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따른 단계적 지도나 징계를 통하여 바른 행동을 교육할 수 있다.
② 학교는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긍정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학교는 문제 행동의 정도에 따라 지도와 징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쳐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는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시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학생 생활 교육과 문제 행동 지도, 징계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등 5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구성하며,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이 업무 담당자가 되어 업무를 진행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이나 담임교사 등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교육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제25조(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 운영) ① '학교내의 봉사' 징계 이하의 조치가 필요할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징계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필요할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요청해야 한다.
②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요청하면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문제 행동 지도 및 징계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모였을 때 열 수 있고, 지도 방법이나 징계 단계를 정할 때는 모인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26조(징계의 단계) ①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학생징계의 단계와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계별 징계 내용]

징계 단계		징계 내용	징계 기간
1호	**학교내의 봉사**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시간 전후로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봉사단체와 협력해서 지도할 수 있다.	1회당 10시간 이내 (창체 봉사활동으로 인정 안함)
2호	**사회봉사**	학교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맡겨 봉사하게 한다. 학교는 학생을 맡기는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 봉사가 교육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일 최대 6시간 이내, 조치별 30시간 이내 (창체 봉사활동으로 인정 안함) 이수증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출석인정으로 처리
3호	**특별교육 이수**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시설 또는 교육방법을 이용하거나 학교에서 정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을 받는다.	징계 사유에 따라 기간 협의 이수증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출석인정으로 처리
4호	**출석정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보호자가 책임	1회당 10일 이내

		지고 교육하거나 학교에서 정해주는 활동을 한다. 교육감이 정한 시설 또는 교육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연간 30일 이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② 학생의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선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쳐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미리 안내받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①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위원회 일정, 징계하려는 이유, 의견을 말할 권리와 의견을 제출할 구체적인 방법을 문서로 안내하여 학생이나 보호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소)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인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의 최종 결정과 재심의) ①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 내용과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 및 징계 종류가 최종 결정되면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문서로 알리고, 보호자가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가 정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생활교육(소)위원회에 재심의(다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징계를 재심의할 때는 생활교육(소)위원회 위원 2/3 이상이 모여야 하고, 모인 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정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요청한 때부터 재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 조치 집행이 중단된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학교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의를 요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생활교육(소)위원회를 거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 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재심의에 대한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의 결정 방법은 제28조 제4항과 같다.

제30조(징계의 집행 등) ①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기간 중에도 학생이 수행 평가 등 학급 공동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급 공동 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학생의 변화 의지가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징계의 단계를 낮추고 기간을 줄이거나 징계를 멈출 수 있다.
③ 학생이 징계를 받는 중에 문제 행동을 반복하거나 징계를 성실히 받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생활교육(소)위원회를 열어 높은 단계의 새로운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방법

제31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운영) ① 생활규정을 새롭게 만들거나 일부 내용을 바꿀 때에는 학생, 교사, 보호자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토의해야 한다.
②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5명에서 10명 사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학생 위원이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어떤 위원이 중간에 그만두어 대신하게 된 위원은 남은 기간만큼만 할 수 있다. 우리 학교의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 교사위원은 교무기획운영부장과 인성교육운영부장,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 회장과 부회장, 학생 위원은 학생자치 대의원회 회장과 부회장 2명으로 정한다.
④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모여야 정식 회의를 열 수 있고, 결정할 때도 모인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32조(학생생활규정을 바꿀 때 지킬 원칙) ① 생활규정을 바꿀 때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만들어야 한다.
② 생활규정을 바꿀 때는 학생과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제33조(학생생활규정을 바꾸기 위한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새로운 생활규정을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동의
2. 전체 교원 1/3 이상의 동의
3. 보호자(학부모)회의 결정 또는 전체 보호자 1/10 이상의 동의
4. 학생자치회의 결정 또는 전체 학생 1/10 이상의 동의
5. 관련된 법령, 지침 등이 바뀌어 학교의 장이 발의

제34조(규정 검토 및 의견 모으기) ①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는 생활규정이 법에 맞거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규정의 내용을 바꿀 때는 학급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보호자(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② 생활규정 내용에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 또는 학생자치회가 요구할 때는 꼭 그 내용을 전체 학생들에게 알리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활규정의 내용을 설문조사, 온라인 투표 등으로 결정할 때에는 학생 의견의 반영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규정 검토 및 의견 모으기의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은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5조(통과와 발표) ①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만든 생활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학교의 장이 발표(공포)하면 정식으로 학교 규정이 된다.
② 생활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대표와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6조(교육 및 안내) ① 학교의 장은 모든 구성원이 생활규정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년 초나 새로운 구성원이 올 때 생활규정 전체 내용을 학교 게시판, 가정통신문,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안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생활규정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에게 달라진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장 제3조(뒷받침하는 법) 등과 같이 본 학생생활규정의 상위 법령, 조례 및 지침 개정 시에는 기존의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상위 법령, 조례 및 지침 적용(적용일 포함)을 우선으로 한다.